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1가단118067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1. A 주식회사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조은성

피 고 1.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신동일

2. E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롬

담당변호사 이세영

변 론 종 결 2022. 7. 5.

판 결 선 고 2022. 9. 2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E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6,141,268원, 원고 B에게 14,802,012원, 원고 C에게 47,749,48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 주식회사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10. 13.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9,183,562원, 원고 B에게 10,958,904원, 원고 C에게 24,062,0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민사판결의 경과

- 1) 피고 D 주식회사는 2013.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9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 12. 4.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 2)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D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G와 F는 피고 E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7607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7. 2. '피고 조합은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D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G 및 F에게 153,144,656원 및 이에 대한 2012. 9. 7.부터 2015. 7.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D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G에게 166,312,14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7.부터 2015. 7.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가 제기되었고,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나2039072)은 2016. 5. 20. ‘피고 조합은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D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G의 소송수계인 D 주식회사 및 F에게 1,242,120,6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7.부터 2016. 5. 2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D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G의 소송수계인 D 주식회사에게 166,312,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7.부터 2015. 7.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가 제기되었으나(대법원 2016다229454) 2018. 11. 15.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나. 관련 형사판결의 경과

1) F는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8. 11. 22. ‘F가 H와 공모하여 2010. 7. 20.경부터 2010. 12. 7.경까지 F 또는 I로 하여금 5,500만 원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F와 H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2) F, H 및 검사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8노522), 항소심 법원은 2019. 12. 6. 항소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고 F, H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2019.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1) 주식회사 J가 F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3나6985 물품대금 사건에서 2013. 5. 30. ‘F는 공동피고 I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2013. 8. 30.까지 원고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잔존원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위 주식회사 J의 승계인으로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6. 8. 19.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원고 A는 위 승계집행문을 기초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3385호로 2016. 9. 23. 청구금액 16,141,268원, 채무자 F, 제3채무자 피고 조합으로 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7607(서울고등법원 2015나2039072, 대법원 2016다229454) 공사대금 등 청구 사건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 또는 합의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원고 A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9. 29. 피고 조합에 송달되었다.

2) 원고 B은 F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나2782 대여금 사건에서 2013. 10. 17. 'F는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부터 2013. 10.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 B은 위 판결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8076호로 2015. 11. 4. 청구금액 14,802,012원, 채무자 F, 제3채무자 피고 조합으로 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7607(서울고등법원 2015나2039072) 공사대금 등 청구 사건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 또는 합의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원고 B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1. 9. 피고 조합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 C은 F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101369 대여금 사건에서 2012. 4. 27. 'F는 원고 C에게 27,760,819원 및 그 중 14,500,000원에 대하여 2011.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 C은 위 판결을 기초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4526호로 2015. 8. 31. 청구금액 47,749,481원, 채무자 F, 제3채무자 피고 조합으로 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7607 공사대금 등 청구 사건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 또는 합의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고(이하 '원고 C의 전부명령'이라 한다), 위 전부명령이 그 무렵 피고 조합에 송달되었다.

라. 채권양도

F는 2016. 10. 1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게 F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서울고등법원 2015나2039072 공사대금 판결금액) 중 621,060,348원 및 그 이자 채권(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채권양도통지 사무를 위임받은 피고 D은 피고 조합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추심금 16,141,268원, 원고 B에게 추심금 14,802,012원, 원고 C에게 전부금 47,749,4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피고 D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10. 13.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F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후 제3채무자인 피고 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변제받았는데,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일부를 변제받아 그 부분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원고들은 원고들 채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양도의 취소와 피고 D에게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조합

1) 원고들이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받은 채무자 F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관련

민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7607,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9072, 대법원 2016다229454)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은 채무자 F와 피고 D를 조합으로 하는 공동수급체의 조합재산에 해당하고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바, 원고들이 조합의 구성원인 채무자 F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채무자 F와 피고 D의 조합재산인 위 관련 민사판결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한 것은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원고들의 압류 등을 근거로 피고 조합에 추심금 또는 전부금을 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

2) 채무자인 F는 2016. 10. 13. 피고 D에게 관련 민사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 A, B은 그 피압류채권이 양도된 이상 피고 조합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없고, 설령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에 대하여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이 사건 추심금 소장 부분이 송달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추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피고 조합은 채무자 F에 대하여 관련 형사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 5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F의 피고 조합에 대한 판결금(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인 47,749,481원을 전부받은 원고 C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

다. 피고 D

원고들이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F의 피고 조합에 대한 채권은 F 개인의 채권이 아닌 F와 피고 D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채권이고, 조합원 중 1인인 F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은 그 채권으로써 조합원 개인인 F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F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조합의 채권은 F 개인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F 개인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위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 1)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조합의 재산인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2) 위 기초사실과 갑 제10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관련 민사판결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7607)에서 K(이하 F에게 조합 지분을 양도하였다)과 피고 D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수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익배분 및 손실부담도 일정 비율을 정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K과 피고 D은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를 전제로 피고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K 및 피고 D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동수급체의 조합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K의 조합 지분을 양도받은 F와 피고 D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관련 민사판결에 따른 채권은 F와 피고 D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동수급체의 조합재산이라 할 것이다.
- 3) 따라서 원고들은 공동수급체의 1인에 불과한 F에 대한 채권으로서 F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위 공동수급체의 채권인 관련 민사판결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원고 A, B의 압류 및 추심명령과 원고 C의 전부명령은 집행대상이 없거나 그 집행이 불가능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피고 조합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2) F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관련 민사판결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은 F와 피고 D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동수급체의 조합재산이고, 조합원 중 1인인 F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은 그 채권으로써 조합원 개인인 F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따라서 F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조합의 채권은 F 개인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F 개인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위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모

[별지]

채권목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7607 공사대금 등 청구 사건에서 F(주민등록번호 1생략)가 E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 또는 합의금 채권』 중 621,060,348원 및 그 이자 채권.

위 채권 중 원고 A 주식회사의 이자 채권 9,183,562원

원고 B의 이자 채권 10,958,904원

원고 C의 이자 채권 24,062,055원

